

울산광역시 동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1681호 2026. 8. 13.(목)

고 시

- 도로명 주소 고시 1

공 고

- 행정대집행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3
-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8

안

내

- 동구 전자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(정기)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수요일 오전
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동구 전자공보 확인방법
☞ 동구 홈페이지(www.donggu.ulsan.kr) → 동구소식 → 고시/공고 → 동구공보

회
람

발행 : 울산광역시 동구

편집 : 기획예산실(☎ 209-3047, 행정 3047)

울산광역시동구 고시 제2026 - 67호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1항, 제12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제25조,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8월 13일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연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1	주전동 280-4번지	동해안로 574	2009-07-10	2026-08-13	동해안에 인접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해당 도로명을 부여함.

+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연번	폐지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 폐지사유
1	대송12길 43	2026-08-13	건물 멸실
2	동진로 66	2026-08-13	건물 멸실
3	동해안로 572	2026-08-13	건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지적과(☎052-209-384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

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-789호

행정대집행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

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수거한 물품의 내역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7일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



1. 공고내용: 행정대집행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
2. 공고기간: 2026. 8. 7. ~ 2026. 9. 7.(31일간)
3. 물품 현황 및 보관 장소

위반 장소	물품명	보관일	보관장소	비고
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5, 화정동 17, 화정동 산28, 화정동 944-2	불임 참고	2026. 8. 4.	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648 인근 적치장	'26. 8. 3. ~ 8. 6. 행정대집행 시행
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55-39	불임 참고	2026. 8. 6.		

4. 문 의 처: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(☎ 052-209-3632)

5. 유의사항

- 보관 물품은 본인 여부 확인 및 행정대집행 비용 등의 납부 확인 후 반환하며, 반환 시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위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, 해당 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.

점용물 등의 목록

관리청 : 울산광역시 동구청

일련번호	품명	규격	수량	위반장소	보관일시	보관장소	취급자성명	비고
1	고무 화분	중형	7	화정동 15	2026.08.04.	서부동 648 인근 적치장	건설과 건설행정팀	
2	운반상자	플라스틱, 40L	1					
3	고무대야	중형	1					
4	아이스박스	20L	1					
5	철제 대야		1					
6	철제 냄비		1					
7	보관용기	플라스틱	1					
8	이동식 미니카트	철제	1					
9	플라스틱 보관함		1					
10	대형 고무통	100L	1					
11	압축 분무기		2					
12	고무장갑	파란색	1					
13	작업용 장갑		1					
14	팔토시		1					
15	등산화		1					
16	장화		1					
17	모종삽		1					
18	물뿌리개	파란색, 녹색	2					
19	회전 의자	갈색	1					
20	양동이	플라스틱	4					
21	양동이	철제	1					

일련번호	품명	규격	수량	위반장소	보관일시	보관장소	취급자성명	비고
22	접이식 우산		1	화정동 15	2026.08. 04.	서부동 648 인근 적치장	건설과 건설행정팀	
23	나무의자		1					
24	버너		1					
25	대나무 발	소형	1					
26	망치		1					
27	테이블	목재	1					
28	의자	철제	4					
29	울타리(그 물망)	약 20m	1					
30	울타리(그 물망)	약 12m	1					
31	플라스틱 의자	초록색, 빨간색	5	화정동 17				
32	테이블	초록색	1					
33	닭장	철제	1					
34	파렛트	플라스틱	5					
35	파렛트	목재	2					
36	양동이	플라스틱	5					
37	고무 화분	중형	10					
38	아이스박스	20L	1					
39	쪼그리 의자	농작업용	1					
40	새모이통	플라스틱	1					
41	울타리(그 물망)	약 23m	1					
42	울타리(그 물망)	약 14m	1	화정동 산28				
43	울타리	약12m	1	화정동 944-2	2026.08. 04.			
44	빨래 건조대	철제	1	서부동 955-39	2026.08. 06.			

일련번호	품명	규격	수량	위반장소	보관일시	보관장소	취급자성명	비고
45	울타리(그물망)	약25m	1	서부동 955-39	2026.08. 06.	서부동 648 인근 적치장	건설과 건설행정팀	
46	양동이	플라스틱	2					
47	보조의자	플라스틱	1					
48	고무통	대형	2					
49	물조리개	파란색	1					
50	접이식 우산	녹색	1					
51	어항	유리	1					
52	울타리(그물망)	약12m	1					
53	울타리(그물망)	약16m	1					
54	보관함	빨간색	1					
55	이동식 카트		1					
56	양동이	플라스틱	2					
57	팔레트	목재	1					
58	팔레트	플라스틱	1					
59	화분	도자기	1					
60	빗자루		1					
61	대야	철제	1					
62	매트		1					
63	삽		2					
64	호미		1					
65	칼		3					
66	이동식 카트		1					
67	방석의자		1					
68	망치		1					
69	울타리(그물망)	약3m	2					
70	울타리(그물망)	약15m	1					

행정대집행 물품 보관 장소



위치도(울산 동구 서부동 648 인근 적치장)

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- 803호

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

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10일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

1. 공 고 명: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6. 8. 10. ~ 8. 25.(15일간)
3. 공고방법: 공보, 게시판, 홈페이지
4. 법적근거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3조(원상복구명령 등), 행정대집행법 제3조(대집행의 절차),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
5. 공고대상 및 내용

구분	대상지	대집행 대상	대집행 내용	대집행 예정일
공유재산	방어동 168-5	울타리, 창고, 적치물, 경작물 등 무단점유 시설물 일체	무단점유 시설물, 적치물, 불법경작물 등의 제거 및 원상복구	<u>2026. 8. 28.</u> <u>~ 8. 31.</u> ※ 기상여건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6. 기타 유의사항

가. 공고기간 내 자진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습니다.

나. 공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「행정대집행법」에

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며,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.

다.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(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)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(처분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)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라. 본 공시송달은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.

7. 문의처: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(☎ 052-209-3632)

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5.11.18.>

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-803호

행정대집행 영장

성명 : 미상

주소 : 미상

2025년 12월 1일,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-1195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점유물(가설건축물, 경작물 등)을 2025년 12월 19일까지 원상회복(자진 철거)하도록 계고서를 공시송달 하였으나,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※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아래 대집행 일정은 기상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대집행 일시	행정대집행 책임자			행정대집행 비용(추산액)
	소속	직위(직급)	성명	
2026. 8. 28.(금) ~ 2026. 8. 31.(월)	건설과	건설행정팀장	이정륜	대집행 후 징수 (소요비용 추후 부과)

2026년 8월 10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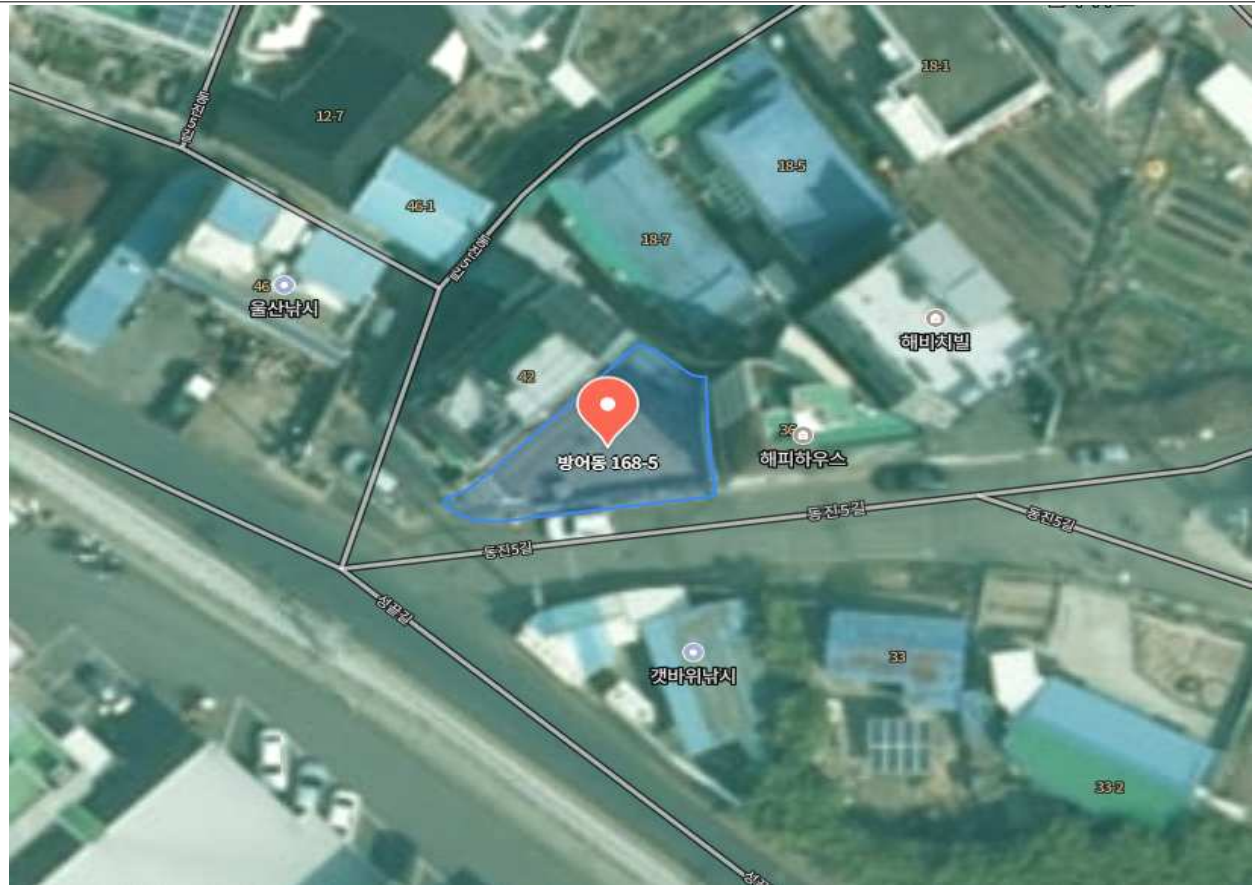
울산광역시 동구청장



무단점유 위치도 및 현장사진

□ 방어동 168-5(대지)

위치도



현장사진

